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1992. 5. 15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2. 4. 24
-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92. 5. 12
- 라. 상정일자 : '92. 5. 13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을 얻어 이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 : 지방재정운영 방향 및 자원조달,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자문
 - 심의위원회 구성 : 10-15인정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이 편성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 성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교수, 지역대표등으로부터 자문을 수렴하여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이 편성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시료되나 다만 위원회구성에 있어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로 수정하고 시행규칙 제정시 부구청장, 국장3인,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전문분야 교수 2인, 지역대표 2인을 반드시 기재토록 요구하였음.

찬성자 : 위원전원

나. 반 대 : 없음.

5. 수정안요지

제3조 3항중 “구의회의원”을 “구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첨 부 : 제정조례(안)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위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 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이하 “자치구”라 한다)

국·과장급공무원과 구의회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 6 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산하 전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달서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